

# 화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

## (유재호의원 대표발의)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1. 2. 유재호 의원 외 7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1. 3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 
(2023. 12. 6. 원안가결)

### 2. 제안요지설명(유재호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화성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택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 등을 제고하기 위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.
-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.
-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.
- 택시운송사업자·택시운수종사자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.
-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.
- 협력체계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.
-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.
-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1조).
- 관리 및 감독, 자료제출요청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, 제13조).
- 합동단속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박만규 전문위원)

가. 본 조례안은 화성시 택시운송사업을 발전시키고 택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
나. 주요내용으로는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,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, 합동단속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.

다.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행중인 보조금 등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,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

라.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홍범의원 대표발의)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1. 2. 정홍범 의원 외 6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1. 3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 
(2023. 12. 6. 원안가결)

## 2. 제안요지설명(정홍범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휴게 여건이 열악한 아파트 경비·청소근로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‘휴게시설’ 및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내 이동에 사용하는 ‘차양 및 비가림시설’ 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추가하고,
-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반영하여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1항이 개정(2023.9. 12.) 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완화되어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가설건축물 대상 추가 정비에 관한 사항(안 제23조제3항제7호 및 제8호 신설).
  -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3조에 따른 학교 내 설치하는 ‘차양시설·비 가리개 시설’
  -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·청소근로자의 ‘휴게시설’
-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비에 관한 사항(안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).
  -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박만규 전문위원)

- 가.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 휴게권,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 근거 마련과 일조권이 완화된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,
- 나. 주요내용으로는 아파트 경비·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과 학교시설 중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하는 사항과
- 다.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하는 사항으로,
- 라. 가설건축물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으로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,
- 마.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한 학교 내 차양시설 및 비 가리개 시설 설치로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며,
- 바.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이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됨으로써, 여유로운 층고 계획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사. 이상,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이계철의원 대표발의)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1. 2. 이계철 의원 외 6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1. 3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 
(2023. 12. 6. 원안가결)

### 2. 제안요지설명(이계철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「건축법」 제80조제5항에서 규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조례위임사항 등을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 상호간의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(안 제43조제5항).

현행 조례 제43조제5항	개정조례안 제43조제5항	건축법 제80조제5항
법 제80조제5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최초의 시정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차례 그 시정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 한다.	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로 그 시정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	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박만규 전문위원)

가. 본 개정조례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「건축법」과 조례 상호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

나. 주요내용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인 제43조 제5항에 ‘1년에 한차례 부과·징수한다’를 ‘1년에 1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’로 일부개정하는 것으로, 이행강제금 부과·징수 유예 및 계도기간 부여 등 이행강제금 부과·징수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며,

다.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